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은 반드시 직접 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판매자(모집인)에게 구두상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정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환상과 같이 조건부으로 인수하는 등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정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환상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은)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생존연금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정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율 및 계약관리비율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 상속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순수상속연금형으로 연금수령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지환급금이 예시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산된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 공시이율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5년내에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내에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
-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이 보험계약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확정기간연금형 신택스 과제)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안내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삼성생명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samsunglife.com(삼성생명 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f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당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콜센터(1588-3114)로 연락주시던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필 2019-0385(BA, 2019-03-13)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생명 콜센터 : 1588-3114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 B2.6(무배당)

늦었다고 생각말고

바로 받는 연금으로 노후는 더 여유롭게!

2019년
4월 개정



삼성생명 SAMSUNG

가입 후 바로 여유가 시작되는 든든한 방법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



상품특징

✓ 최소 40세부터 최대 85세까지

-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성장기부터 노후생활기까지 각 라이프사이클의 재정적 니즈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 즉시 지급

- 퇴직금, 사업정리자금, 부동산 매각자금 등과 같은 목돈으로 가입 후 만 1개월 후부터 매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방식의 연금지급

- 순수종신연금형(기본형, 브릿지연금형), 상속연금형(만기형, 종신행), 확정기간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고객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익자 지정

- 가입시점에 연금선(先)수익자와 연금후(後)수익자 지정이 가능하여 연금수령권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연금선(先)수익자 : 연금지급개시시 우선적으로 연금수령권(만기보험금 포함, 이하 같음) 가짐
- 연금후(後)수익자 :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가 사망한 이후에 연금수령권을 가짐

※ 보험기간 중 연금선(先)수익자, 연금후(後)수익자 모두 사망한 이후에도 지급될 연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금후(後)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수령권을 가지며, 보험기간 중 연금후(後)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연금선(先)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연금후(後)수익자로 함

✓ 상속세 납부재원

- 피보험자 유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상속연금형 선택시)

✓ 안정적인 수익 추구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

✓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단, 확정기간연금형 선택시 과세)

가입 한 달 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예시

여자 40세, 일시납보험료 1억원, 공시이율 연복리 2.66%(2019년 3월 기준) 지속가정시

순수종신연금형

기본형 | 552회 보증

매월 약 **26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18만원

종신
지급

브릿지연금형 | 552회 보증

매월 약 **27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20만원

종신
지급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66%는 2019년 3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상기 예시된 최초 수령액 기준 최저보증이율 연금월액은 연금일부 보험기간 동안 최저보증이율(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일 시점의 최저보증이율'이 계속하여 적용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으로, 최저보증 지급되는 연금월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연금월액은 최저보증이율 지속 가정으로 상기 예시된 연금월액보다 더 적아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연금월액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연금지급액은 예상금액과 상이합니다.

상속연금형(만기형)

상속연금형(10년 만기)

매월 약 **18만원**

※ 최저보증이율 기준 매월 약 5만원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사망시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적립액

보장내용

순수종신연금형 (기본형, 브릿지연금형)

| | | |
|--------|---|--|
| 기본형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해당 연계약해당일에서 만기개월이 경과한 월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까지 '보장개시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식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 |
| 브릿지연금형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해당 연계약해당일에서 만기개월이 경과한 월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까지 '보장개시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배수(2배)에 따라 브릿지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브릿지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지급배수(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확정기간연금형

| | | |
|--------|---|--|
| 생존 연금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중 보장개시일부터 만기개월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식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 |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기본보험료의 10% |

상속연금형 (만기형)

| | | |
|--------|---|---|
| 생존 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중 보장개시일부터 만기개월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식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 |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
| 만기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상속연금형 (종신형)

| | | |
|--------|---|---|
| 생존 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중 보장개시일부터 만기개월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식에 따라 종국연령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되도록 하는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 |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

※ 연금계약적립액: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소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일지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생존연금,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 등을 차감한 금액
※ 연금계약재원: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장래 발생할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한 금액

1.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보험기간 종료시
2. 순수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해지 불가
3. 연금월액은 '연금월액'단,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4.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월액은 산출방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계약체결비용에 대한 시류정산액 (계약체결비용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시점의 공시이율의 차이를 정산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
5.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월액도 변경 될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직전 연금월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변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과거 '해당 월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월'의 연금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상속연금형(종신형)의 연금월액 계산시 적용되는 종국연령이라 함은 연금사망률의 최종 연령을 말하며, 산출방식에서 정한 바를 따름
7. 보증지급횟수란 최소보증지급횟수부터 최대보증지급횟수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단, 횟수는 12의 배수로 함)를 말하며, 이하 동일할 때 보증지급횟수 중 '최소보증지급횟수'란 '1'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로 함]년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를 말하며, '최대보증지급횟수'란 '10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년수'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를 말함
8. 최소보증지급횟수 중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이하 동일할

9. "브릿지횟수"란 보증지급횟수 이내의 연금월액을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 초기에 집중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5년(60회)부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단위 기간에 12를 곱한 횟수'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를 말함
10.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월액 총합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도 하며, 이하 같습니다]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20회, 180회, 240회 또는 360회)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
11.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식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음
12.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의 전부를 산출방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음
13.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의 연금월액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연도의 연금월액(2회분)을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산출방식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음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 | |
|----------|---|
| 가입나이 | 40 ~ 85세 |
| 보험기간 | ·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만기형) : 10 · 15 · 20 · 30년 · 순수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 : 종신(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해지불가) |
| 가입한도 | 1,000만원 ~ 50억 * 가입한도 내에서 원 단위 납입가능 |
| 납입주기 | 일시납 |
| 연금지급개시시점 | 가입 후 만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 |

연금월액 지급예시

여자 40세, 40세 연금지급개시, 일시납보험료 1억원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장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체계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0%는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66%(2019년 3월 기준)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66%는 2019년 3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 |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 |
|------------------------------|--------------------|-----------|--------------------|--------------------|---------|
| (단위 : 원) | 순수 종신 연금형 | 기본형 | | | |
| | | ① 120회 보증 | 189,820 | 256,700 | 265,920 |
| | | ② 552회 보증 | 187,610 | 254,060 | 263,220 |
| 브릿지 연금형 (집중배수 2배기준) | ① 120회 보증/브릿지 120회 | 309,560 | 398,600 | 410,340 | |
| | ② 552회 보증/브릿지 552회 | 204,620 | 269,640 | 278,550 | |
| | ③ 720회 보증/브릿지 720회 | 183,560 | 249,960 | 259,150 | |
| 확정 기간 연금형 | 10년 만기 | 842,160 | 897,750 | 904,640 | |
| | 20년 만기 | 437,320 | 503,830 | 511,160 | |
| | 30년 만기 | 300,000 | 375,110 | 382,930 | |
| 상속 연금형 | 만기형 | | | | |
| | 10년 만기 | 58,890 | 168,360 | 181,040 | |
| | 20년 만기 | 50,110 | 183,330 | 195,940 | |
| | 30년 만기 | 47,120 | 188,190 | 200,760 | |
| | 종신형 | 40,500 | 188,420 | 200,660 | |

- * 상기 예시된 최초 수령액 기준 최저보증이율 연금월액은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최저보증이율(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일 시점의 최저보증이율')이 계속하여 적용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으로, 최저보증 지급되는 연금월액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연금월액은 최저보증이율 지속 가정으로 아래 예시된 연금월액보다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 * 상기 연금월액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연금지급액은 예상금액과 상이합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기본형, 브릿지연금형)은 연금지급시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연금개시후 사망시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드리기, 환입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월액 총합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20회, 180회, 240회 또는 36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생존연금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단, 공시이율이 계속하여 동일하다면 브릿지연금형의 경우 브릿지횟수 이후 생존시 상기 예시금액을 지급배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상기 예시된 연금월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예시된 순수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횟수는 ① 최초 보증지급횟수(이)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대여명년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 ② 기대여명 년수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 ③ 최대보증지급횟수(100에서 연금지급개시시기를 차감한 년수)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입니다.
- * 확정기간연금형 선택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상기 예시된 연금월액은 이자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브릿지연금형)을 선택시 브릿지횟수와 지급배수에 따라 비과세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며,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 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예시표

여자 40세, 일시납 1억, 상속연금형(만기형) 10년만기

- *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실제이율은 공시이율이나, 본 상품안내장에서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상한) 및 공시이율을 가정하여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체계에 따라 예시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50%는 평균공시이율 2.50%(2019년 기준)와 '공시이율 연복리 2.66%(2019년 3월 기준)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아래에 예시된 연복리 2.66%는 2019년 3월 기준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

| 경과기간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납입보험료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최저보증이율 기준 | | | | | |
| 적립액 | 9,866 | 9,899 | 9,933 | 9,919 | 10,000 |
| 적립률 | 98.6 | 98.9 | 99.3 | 99.1 | 100.0 |
| 해지환급금 | 9,677 | 9,774 | 9,871 | 9,919 | 10,000 |
| 환급률 | 96.7 | 97.7 | 98.7 | 99.1 | 100.0 |
| 연복리 2.50% 지속가정시 | | | | | |
| 적립액 | 9,853 | 9,862 | 9,870 | 9,879 | 10,000 |
| 적립률 | 98.5 | 98.6 | 98.7 | 98.7 | 100.0 |
| 해지환급금 | 9,665 | 9,736 | 9,807 | 9,879 | 10,000 |
| 환급률 | 96.6 | 97.3 | 98.0 | 98.7 | 100.0 |
| 연복리 2.66% 지속가정시 | | | | | |
| 적립액 | 9,853 | 9,861 | 9,870 | 9,879 | 10,000 |
| 적립률 | 98.5 | 98.6 | 98.7 | 98.7 | 100.0 |
| 해지환급금 | 9,665 | 9,736 | 9,807 | 9,879 | 10,000 |
| 환급률 | 96.6 | 97.3 | 98.0 | 98.7 | 100.0 |

- * 상기 해지환급금은 적립액에서 해지공제금액(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이며, 적립액이란 연금계약적립액과 보장계약적립액(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합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보험금 산출방식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연금계약적립액이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보장계약 순보험료)를 말하며,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일지계산에 의하여 적용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생존연금,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자관리비용(납입후)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 순수종신연금형으로 연금수령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지환급금이 예시되지 않습니다.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상금액과 상이합니다.
- *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 각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보장계약 순보험료)를 말하며, 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확정기간연금형 선택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이자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직전 1년 공시이율 변동내역

| 공시이율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8.10 | '18.11 | '18.12 | '19.1 | '19.2 | '19.3 |
|------|-------|-------|-------|-------|-------|-------|-------|--------|--------|--------|-------|-------|-------|
| 공시이율 | 2.60% | 2.60% | 2.60% | 2.60% | 2.64% | 2.67% | 2.67% | 2.65% | 2.65% | 2.64% | 2.64% | 2.63% | 2.66% |

- * 이 보험상품은 객관적 외부지표(리(주)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인정증권수익률」 및 「앞도성예금중서 유통수익률」을 혼합한 이율)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 * **공시이율 변동(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에 따라 연금월액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합니다.**